

#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999년 7월28일  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6월 23일,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7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7월27일)상정,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경식)

가. 제안이유

-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에 부응하고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내용으로 반장위촉 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반장위촉 자격의 완화(제2조)
  - “관할구역안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”로 되어 있는 거주기한을 폐지하고 위촉연령인 20세이상 60세이하”의 상한연령을 삭제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먼저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

- 평창군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반장의 자격 요건을 “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”로 규정하는 있음. 본 위촉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규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#### 나. 조례개정시

- 농촌인구 고령화와 반장을 기피하는 우리군 현실을 고려해 볼때 조례개정을 통한 반장자격 완화는 현실성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첨 부 :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